

2005년도 이제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 놓고 있다. 12월은 직장인에게 있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달이다. 종무식과 더불어 한두건의 송년회 모임으로 술로 휘청하다보면 지난 일들을 되돌아 볼 시간도 없이보신각 종소리를 들어야 할지 모른다. 하지만 꼭 빼먹지 말고 챙겨야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다. 이번 호에서는 달라진 2005년(2006년 1월 적용)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자.

1.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(조 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)

종 전	개 정
신용카드(현금영수증 포함) 소득공제 기준	▶ 최저사용금액 기준 : 총급여의 15% 초
▶ 최저사용금액 기준 : 총급여의 10%초	과금의 20%를 공제
과 금액의 20%를 공제	

- ※ 신용카드 ·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기준 조정시 소득 공제액 계산 사례
- 2005년 사용분 신용카드 2천만원, 현금영수증 1천만원
- 총급여액 : 5천만원
- 소득공제금액 450만원(현금영수증 포함. 총 급여의 15%적용)
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=①과②중 적은 금액 = 450만원

- ① (2천만원 +1천만원 5천만원 × 15%) × 20% = 450만원
- ② 한도액: 총급여액 × 20%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= 500만원
- *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: 신용카드 + 직불카드 + 기명식선불카드 등
- 2.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발급대장 · 보관의무 부여(소득세법 제 160조의 3, 시행령 제 208조의 3(신설)
 - ▶발급대장 기재 사항
 - 기부자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
 - 기부금액, 기부일자
 -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
- 3.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·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중 복적용 배제를 위한 영수증 양식보안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)(개정)
- 4.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(소득세법 시행 령 제17조, 시행규칙 제9조)(개정)

종 전	개 정
▶ 비과세 적용요건	▶ 근로자 범위 확대
- 급여요건 :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	- 우편물 집배원, 신문배달원 물품 배
- 비과세범위 : 연240만원 한도	달원, 수하물 운반원, 기타 배달 및
– 근로자범위 : 공장 · 광산 · 어업 · 운	수하물 운반원
전관련 근로자	

- 5.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(소득세법 제51조)(1인당 연 100만원 → 1인당 연 200만원)
- 6.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(소득세법 제52조)

종 전	개 정
근로소득 특별공제	▶ 근로자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: 60만원 → 100
▶ 근로자는 증빙에 기초한 실액공제와 증빙이 필요	만원
없는 표준공제중 선택 가능	※사업자 : 현행과 같이 60만원
• 실액공제 : 교육비 · 의료비 · 기부금 등(12종)	
• 표준공제 : 60만원	
* 표준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 대해서	
도 적용	

- ※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하여 특별공제 대신 별도의 증빙제출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현행 교육비, 의료비,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을 첨부하여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 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음.
- ※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기부금, 결혼, 이사, 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 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됨.
- 7.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화(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)

종 전	개 정
▶ 교육비·의료비·기부금 등 특별공제를 적용 받	▶ 암호화코드, 복사방지마크 등 위·변조 방지 장치
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제출	를 갖춘 인터넷영수증도 소득공제증빙 영수증으
– 소 득공 제 증빙서류 간편화	로 인정
	▶ 위·변조 방지장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제청
	장이 정할 수 있음

- ※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는 증빙종류 : 보험료 납입증명서, 주택 마련저축 납입증명서, 주택자금 상환증명서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, 개인 연금저축 납입증명서, 연금저축 납입증명서, 학위취득과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 행한 교육비납입증명서,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
- 8. 소득세율 1%인하(소득세법 제55조. 제129조.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)
- 9. 근로자 능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(소득세법 제52조, 시행령법 제110조의 3)

종 전	개 정
교육비공제 대상	교육비공제 대상
▶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 등의 초·중·고 및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 수업료	▶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 확대
	• 대상 :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 발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수 강료
	• 단,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제외

참고: www.koreatax.org/tax(한국납세자연맹)

